#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준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42 발의연월일: 2024. 9. 26.

발 의 자: 박준태·고동진·박충권

박덕흠 · 정희용 · 박수민

이헌승 · 최수진 · 유상범

이철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,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부정기형 을 선고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.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, 이는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,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며 가석방 기준을 강화함으로

써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(안 제4조, 제59조, 제65조). 법률 제 호

##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"소년"을 "소년(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제59조 중 "15년"을 "20년"으로 한다.

제65조제1호 중 "5년"을 "1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15년"을 "20년"으로,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년의 처벌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	제4조(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		
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ュ) ①		
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			
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.			
1. 죄를 범한 <u>소년</u>	1 <u>소년(「특정강력</u>		
	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		
	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		
	범한 소년은 제외한다)		
2.・3. (생 략)	2.•3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제59조(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)	제59조(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) -		
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			
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			
형(無期刑)으로 처할 경우에는			
<u>15년</u> 의 유기징역으로 한다.	<u> 20년</u>		
제65조(가석방) 징역 또는 금고를	제65조(가석방)		
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			
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			
석방(假釋放)을 허가할 수 있			
다.			
1. 무기형의 경우에는 <u>5년</u>	1 <u>10년</u>		
2. <u>15년</u> 유기형의 경우에는 <u>3년</u>	2. <u>20년</u> <u>5년</u>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